

Korean Tax Update

July 2021, Issue 85

[조세뉴스]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전문보기]

1.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10·§2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2 단계 지원 구조에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지원분야 및 대상기술>

| 구분 | 국가전략기술(안) |
|------------|---|
|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6nm 이하급 D램) ✓ 170 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28 단이상 낸드플래시) ✓ SoC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
| 배터리 (이차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 |
| 백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 |

<공제율 추가 우대>

①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 구분 (%) | | 대 | 중견 | 중소 |
|------------|---------------|--------------|----|--------------|
| 기존 | 일반 | 2 | 8 | 25 |
| | 신성장·원천기술 | 20~30 | | 30~40 |
| 개정안 | 국가전략기술 | 30~40 | | 40~50 |

②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

| 구분 (%) | | 당기분 | | | 증가분 |
|--------|----|-----|----|----|-----|
| | | 대 | 중견 | 중소 | |
| 기존 | 일반 | 1 | 3 | 10 | 3 |

| | | | | | |
|-----|----------|---|---|----|---|
| |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12 | |
| 개정안 | 국가전력기술 | 6 | 8 | 16 | 4 |

- (적용시기)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 (조특법 §10·조특령 §9·별표 7 등)

-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정비체계를 제도화
 - (대상기술 확대)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
 - * 예) 철강·화학 등 탄소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기술 등
 - (기술평가 심의·개선)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존기술 평가 및 신규기술 도입 심의,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주기적(3년)으로 존속여부 평가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 (조특령 §21)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추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 내국인이 자체·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4) 기술 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2)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의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현행: 중소기업)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6의 2·§16의 3·§16의 4)

- 벤처기업이 자회사(「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 * (현행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6)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 (법인법 §44, 법인령 §80의 2)

-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자본시장법 시행령」 §6④(14))
 -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12의 3·§12의 4, 조특령 §11의 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8)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조특법 §29의 7)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21년, '22년 고용증가분 한시 적용)
 - 기존 공제금액

| 구분(단위: 백만원) | 중소 | | 중견 | 대 |
|----------------------|-------|-------|-----|-----|
| | 수도권 | 지방 | | |
| 청년·장애인 ·60세이상 근로자 | 1,100 | 1,200 | 800 | 400 |

| | | | | |
|----|-----|-----|-----|---|
| 기타 | 700 | 770 | 450 | - |
|----|-----|-----|-----|---|

- 개정안 공제금액

| 구분(단위: 백만원) | 중소 | | 중견 | | 대 | |
|-----------------------|-------|--------------|-----|------------|-----|------------|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청년·장애인 ·60 세이상 근로자 | 1,100 | <u>1,300</u> | 800 | <u>900</u> | 400 | <u>500</u> |
| 기타 | 700 | 770 | 450 | 450 | - | - |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29 의 3)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 요건을 '3 년 이상'에서 '2 년 이상'으로 완화

(1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조특법 §30 의 4)

- 공제기간(2 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 *하도록 정비
* 고용중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 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11)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조특법 §30 의 2, 조특령 §27 의 2)

-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 제외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조특법 §104 의 24, 조특령 §104 의 21)

-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국내 복귀) 기한 요건을 '1 년'에서 '2 년'으로 완화

(13)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25 의 6, 조특령 §22 의 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 제작비용 추가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The-Top Service)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조특법 §19, 조특령 §17)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일 것'의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에서 15%로 상향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19-§19 호의 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추가

(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조특법 §8 의 4)

- 중소기업의 '21 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 개 과세연도('19 년, '20 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4)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81 의 14, 법인법 §74 의 2 신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5)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법 §50 의 2 신설, §113)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3.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 의 2 신설)

-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 신설
 -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법 §53 의 2)

-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 공급 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 부여(과세관청 제출요구 시 60일 이내 제출)
 - * 용역의 종류,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

(3)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국조령 §100)

-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 하거나 기한 후 제출한 경우 과태료 30%~90% 감경(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 과태료 감경기준 개정안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 | 기한 후 제출 | |
|----------------|---------|-------------|---------|
| 수정 제출한 시점 | 과태료 감면율 | 기한 후 제출시점 | 과태료 감면율 |
| 6월 이내 | 90% | 1월 이내 | 90% |
| 6월 초과 1년 이내 | 70% | 1월 초과 6월 이내 | 70% |
| 1년 초과 2년 이내 | 50% | 6월 초과 1년 이내 | 50% |
| 2년 초과 4년 이내 | 30% | 1년 초과 2년 이내 | 30% |

(4)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국조법 §27)

- 특정외국법인(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하고, 세부담을 판정기준 현실화
 -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법인세법」 개정, '20.12월)

-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에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이하'로 조정

(5)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 의 4, 관세령 §39)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추진
 - (현행) 1 일 0.025%(연 9.125%) → (개정안) 1 일 0.019~0.022%(연 6.9~8%) 범위 내 결정

(6)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 (현행)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 개월 이내 →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 년 이내

(7)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75)

- 거래당사자가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과 용역의 직접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라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현행) 재화의 직접/위탁공급 착오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허용 → (개정안) 용역의 직접/위탁공급 착오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8)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부가법 §17③)

-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인정요건을 동일 과세기간 내 '① 공급시기 도래 및 ② 대가수령하는 경우'에서 '①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로 완화

(9)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확대
 - (현행)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 일 이내에 도래 → (개정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 개월 이내에 도래

(1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부가령 §70①)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현행)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 년까지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법 §35②)

-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 수입하는 자가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관세법」 제 11 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관세법」 §42② 부당한 방법)

-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1)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 (법인법 §63 의 2)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방법 명확화
 -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법인령 §89③)

-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3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 3년간 의무적용 함을 명확화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조특령 §100 의 32④, 조특칙 §45 의 9②)

-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이월결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u>공제가능한</u> 결손금 |
| 법인세액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

(4)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조특법 §127)

-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

(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중부령 §4①)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을 합산배제 주택으로 확대 규정

(6)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부가법 §10⑧ 신설)

-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에 추가
- *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제외

(7)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부가법 §29④)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부가세 시가 과세대상에 포함

(8)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부가법 §60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 개국의 지지 확보 (기획재정부) [전문보기]

'21.7.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였음.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되었으며,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힘.

[판례]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 두 69977 판결

- 원고 1은 A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과 달리 임차인인 A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시설보수·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세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1이 A 회사와 약정한 임대료는 원고 1 대신 A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과 책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A 회사가 부담하게 된 이러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A 회사가 전대료로 원고 1이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전대료 상당액이 바로 원고 1이 A 회사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보고 원고 1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있음. 또한, 원고 1이 A 회사 주식을 다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형성한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명의신탁의 결과로 증여세를 부담할 따름인 원고들이 이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수행위 등을 동반하여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과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A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 10 조 제 2 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납세자승)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 두 54408 판결

-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2012두24573), 나아가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심판례]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

조심 2019 부 4287, 2021. 6. 14.

- 준비금 규정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준비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된 소득금액대비 적립된 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준비금 적립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된 소득금액 내에서 신고조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추가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와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여부 및 그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0 지 0794, 2021. 6. 23.

- 분할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이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권리자를 분할 후의 불복청구 당사자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상법」 제530조의10에서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되는 것(국심2002서1692)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경정 등의 청구권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 등 청구권자의 지위도 「상법」 제530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존속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운전기사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구 8245, 2021. 6. 22.

-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운전기사에 대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해당 자동차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 등으로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부분에 대하여 그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어서 그 규정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해당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부가가치세 규정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 관련 용역대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령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등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 쟁점매입세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서 8021, 2021. 7. 1.

- 당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의 결과로서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선행 소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손금산입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 부분에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그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과, 영업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먼저 과세한 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사이에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른 가산세 추가징수나 적정할인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실질적 세수의 차이 발생 등의 문제만이 존재할 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조세의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였는데, 감가상각비는 자산을 전제로 존재하는 항목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그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이월공제액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서 7914, 2021. 7. 8.

- 개정 조특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개정 조특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온 이월세액공제액이 그 과세연도에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 관한 것으로서 개정 조특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일인 2012.1.1. 이후 개시하는 2014·2015사업연도로 이월되어온 쟁점이월공제액의 경우 개정 조특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개정 전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는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석·박사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충분한 세제지원이 있고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대기업의 석사 및 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정점이월공제액을 개정 전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예규]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자가 건설하면서 시운전기간 중에 지출한 시운전비용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전력 판매 매출을 시운전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05, 2021. 4. 20.

-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운전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2017.12.19. 법률 제 152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 기간 중에 발생한 전력 판매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해당 전력 판매액을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결산 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 5. 25.

-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8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 60 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 2021. 6. 14.

-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2021. 6. 28.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2 제 1 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2020 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차기환류적립금을 해당 사업연도(2019 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2019 년)의 당초 미환류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미환류소득을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2019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동 법인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입사일로부터 5 년의 기간내에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2021. 6.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이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같은 조 제 1 항의 적용상 '청년')이 같은 조 제 1 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위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 분의 9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삼성 KPMG 조세본부 소식]

[기고] 경정청구했던 세금, 또 고쳐달라 할 수 있을까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Director (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 2021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